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명시함(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).
-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추가하고, 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,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의3).
-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의4 신설)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의3의 조제목에서는 “불법촬영물등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, 본문에서는 “촬영물등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안 제7조의4에서 이를 다시 “불법촬영물등”으로 약칭하고 있어, 법문의 표현을 “불법촬영물등”으로 통일하여 효율적으로 규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 정 안	검 토 의 건
제7조의3(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(이하 이 조에서 “촬영물등”이라 한다)이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유포되어 피해(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)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 및 신상정보(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, 성명, 나이, 직업, 학교, 용모,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~ ⑧ (생략)	제7조의3(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(이하 “불법촬영물등”이라 한다)이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유포되어 피해(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)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(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, 성명, 나이, 직업, 학교, 용모,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~ ⑧ (생략)

(전문위원 박 동 찬)